

제 14 장 정부조달

제 14.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정부조달로 다음을 말한다.
 - 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해 조달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구매, 리스,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임차 또는 할부 구매와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 다. 제14.5조에 따른 공고의 공표 당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부속서 14-가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 마. 이 장 또는 부속서 14-가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다른 부동산 또는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응자, 지분참여, 보증, 재정적 유인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 다. 재무 대리 또는 예탁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서비스, 또는 응자,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와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다음 활동과 관련된 은행, 금융 또는 특화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공적부채 발생, 또는

2) 공적부채 관리

라. 공공고용계약 및 관련 조치

마. 군대 주둔 또는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 또는 국제기구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수행되거나,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적용가능한 절차나 조건이 이 장과 불합치하는 조달

바. 해외원조 제공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조달, 그리고

사. 조달기관을 위해 다른 조달기관으로부터의 구매

4.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있어, 조달기관이 부속서 14-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인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4.3조를 그러한 요건에 준용한다.

가액산정

5. 협정 적용대상 조달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달의 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가. 조달을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해당 조달을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아니하며,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용하지도 아니한다.

나.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

1) 그 조달에서 규정될 수 있는 할증료, 요금, 수수료, 이자와 그 밖의 수입 흐름, 그리고

2) 그 조달이 선택 조항의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택 구매를 포함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 그리고

다. 조달이 동시에 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으로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는 경우, 전 기간에 걸친 최대 총 조달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6.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이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그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 14.2 조 예외

1. 그러한 조치가 같은 조건하에 있는 양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2. 양 당사국은 제1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 14.3 조 일반원칙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1.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해,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 2.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 가. 외국인과의 연계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또는
 -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청약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전자적 수단의 이용

3.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나.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조치

4. 제1항과 제2항은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그 밖의 수입규정 또는 절차, 그리고 적용대상조달을 규율하는 조치 외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응구매의 금지

5.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적용대상 조달의 모든 단계에서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원산지 규정

6.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해 통상적인 무역거래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조달의 수행

7.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 가.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
-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 다.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제 14.4 조

조달제도에 관한 정보

-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조달 법률, 규정, 절차, 정책지침, 사법 결정 및 행정 판정, 그리고 이들에 대한 모든 변동 또는 추가사항을, 널리 유포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조달 법률, 규정, 절차, 정책지침, 사법적 결정 및 행정 판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답한다.

제 14.5 조 공고의 공표

예정된 조달의 공고

- 각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 조달기관은 제14.10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관심있는 공급자들에게 입찰서 또는, 적절한 경우, 해당 조달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러한 공고는 조달 입찰을 위해 설정된 전체 기간 동안, 널리 유포되고 대중이 무료로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또는 종이 매체로 공표한다. 각 당사국은 조달기관이 인터넷 또는 비슷한 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 하나의 창구에 전자적 수단으로 예정된 조달의 공고를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조달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조달 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 그리고 이들의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나.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조달에 대한 설명

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라. 사용될 조달 방법과 그 방법이 교섭 또는 전자 경매를 수반하는지 여부

마.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바.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사. 공급자가 제출해야 할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다만,

그러한 요건이 예정된 조달의 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수할 수 있게 된 입찰서류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조달기관이 제14.7조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입찰 참가권유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한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그리고

자. 해당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

계획된 조달의 공고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매 회계연도 조달 계획에 관한 공고를 매 회계연도 전에 또는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그 공고는 최소한 조달의 대상 및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대한 공표 계획일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제 14.6 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상업적,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가. 해당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나.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평가한다.

다.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종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제 14.7 조 공급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

등록제도와 자격심사 절차

1.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 참가하도록 허락되기 전에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공급자에게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에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공지가 관심있는 공급자가 지원에 착수할 수 있고, 조달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립 가능한 한도에서, 등록 및/또는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내에 공표되도록 보장한다.

선택입찰

2. 당사국의 법이 선택입찰절차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각각의 예정된 조달에 대해,

가. 관심있는 공급자가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조달기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기초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조달 참가를 신청하도록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나. 조달기관이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또는, 공개된 경우, 그 입찰 서류에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그러한 제한 기준을 기술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모든 국내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유자격자 명부

3.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해당 명부에 포함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공고가 연간 발행되거나, 달리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조달기관은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할 수 있다. 그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나.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기 위하여 공급자가 만족시켜야 하는 참가 조건과 공급자가 해당 조건을 만족시켰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이 사용할 방법

다.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마. 유자격자 명부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4. 조달기관은 공급자에게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될 것을 신청하도록 협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유자격 공급자를 해당 명부에 포함시킨다.

제 14.8 조 기간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입찰참가 신청서의 제출 마감일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부터 원칙적으로 25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이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될 수 있다.

3.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를 다음의 날부터 4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가. 공개입찰의 경우,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그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3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부속서 14-가 제11절에 열거된 전자적 수단으로 제14.5조 제3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공고를 최소 40일, 그리고 최대 12개월을 넘지 않을 만큼 미리 공표한 경우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한 공고를 2차 또는 후속 공표하는 경우, 또는

다. 조달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5. 조달기관은 제3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모든 입찰에 관한 서류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 입찰서가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기관에 의해 접수될 수 있는 경우

6. 제4항과 연계하여 제5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미만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어떠한 다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13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모두 동시에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8. 부속서 14-가의 조달기관이 모든 또는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선정한 경우, 입찰 기간은 조달기관과 선정된 공급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 14.9 조 예정된 조달에 관한 정보

1. 조달기관은 조달에 참여하는 데 관심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한다.

2.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비롯해 기술규격, 적합성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공급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정적 보증,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한 공급자의 모든 참가조건

다.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평가 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경우, 평가 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칙

마.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권한이 있는 인들

바. 지불조건 및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사.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3. 조달기관은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조달기관이 입찰 절차에서 복수의 언어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언어 중 하나는 영어이다.

기술규격

5. 조달기관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6.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명시한다. 그리고
- 나. 국제표준의 사용이 조달 기관의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정된 국가표준의 사용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표준이 존재하고 조달기관에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기술규격을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7.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실증적으로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한다.
8.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당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구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은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수정

11. 조달기관이 입찰에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기준 또는 기술요건을 낙찰 전에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 또는 재발행하는 경우, 해당 조달기관은 그러한 모든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서면으로 전달한다.
-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당시 참가한 모든 공급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전달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 나. 그러한 공급자가 적절하게 개정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한다.

제 14.10 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자국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조항을 원용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11조 및 제14.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요건이 상당 부분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경우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에 관한 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 이유 중의 하나로 합리적인 대안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요건이 예술품에 대한 것인 경우
-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 보호, 또는
-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가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 1) 경제적 이유 또는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증복을 초래하는 경우

라. 엄밀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이용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마.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바.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이 이행된 경우, 그 후의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은 이 장과 합치되는 절차의 적용대상이 된다.

사. 청산, 법정관리 또는 파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처분의 경우에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만, 정상적인 공급자로부터 일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특히,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와 관련해서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을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해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자. 최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입찰에 관한 서류 원본의 목적 내에 있는 추가적인 건설 서비스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그 서류에 기술된 건설 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그러한 경우, 추가 건설 서비스에 낙찰된 계약의 총 가액은 최초 계약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가. 조달기관의 명칭

나.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다.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한 제1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

제 14.11 조 전자 경매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이용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 기준에 기초하고 경매 과정에서 자동 순위 또는 순위 재조정에 사용될 수학적 공식을 포함한 자동 평가 방법

나.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모든 최초 평가 결과, 그리고

다. 경매 수행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제 14.12 조 입찰서 취급 및 낙찰

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 개찰 및 취급한다.

2. 조달기관은 최소한 입찰서 개찰 전까지 모든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한다. 특히, 조달기관은 특정 공급자에게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조달기관은 입찰서의 접수가 오로지 해당 조달기관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지체된 경우, 입찰서 접수에 명시된 시각 후에 접수된 입찰서의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4. 조달기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낙찰

5. 조달기관은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 입찰서가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입찰서가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6. 조달기관이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달기관은,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판단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자에게 낙찰한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7. 조달기관이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8. 조달기관은 이 장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해지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 14.13 조 낙찰 후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낙찰 결정을 신속히 통지한다. 조달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되지 아니한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 및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을 제공한다.

2. 조달기관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각 계약의 낙찰 후 72일 이내에 부속서 14-가 제11절에 열거된 적절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공고를 공표한다. 그 조달기관이 그 공고를 전자적 수단으로만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공고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나.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다.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라. 낙찰금액

마. 낙찰일 또는 계약일, 그리고

바. 사용된 조달방법의 종류 및 제14.10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이용된 경우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3. 각 조달기관은 계약 낙찰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다음을 보존한다.

가. 제14.1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의 서류와 보고서,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적용대상조달 행위의 적절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제 14.14 조

국내 심의 절차

1.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 있어 발생하는 다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를 제공한다.

가. 이 장의 위반, 또는

나. 공급자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이 장의 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 조치의 준수 실패

2. 공급자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에 있어 발생하는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는 공급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조달을 수행하는 조달기관의 당사국은 조달기관과 공급자가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장려한다. 그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의 진행 중인 또는 향후의 조달 참가,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상 시정 조치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이의제기를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검토한다.

3. 각 공급자는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부여받으며,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이의제기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일 이상이다.

4.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한 당사국의 법에 따라, 당사국의 공급자가 제출하는 이의제기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기 위해 자국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유지한다.

5. 제4항에 언급된 당국 이외의 기구가 이의 신청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급자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집행한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법원이 아닌 심사기구의 결정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 조달기관은 이의제기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심사기구에 모든 관련 서류를 공개한다.

나. 심사절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는 이의제기에 관한 심사기구의 결정 전에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다. 참가자는 대표되고 동반될 권리를 갖는다.

라. 참가자는 모든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마. 참가자는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바. 공급자 이의제기에 관한 심사기구의 결정 또는 권고는 각 결정 또는 권고의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공급자의 기회를 보존하는 신속한 잠정조치. 그러한 잠정조치는 조달 절차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에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나. 심사기구가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입찰 준비 비용 또는 이의제기와 관련된 비용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로 제한될 수 있는,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정정 행위 또는 보상

제 14.15 조 적용범위의 정정 및 수정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해 순수하게 형식적인 성질의 정정 또는 부속서 14-가의 양허표에 사소한 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의 접수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정 또는 사소한 정정을 하는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달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수용 가능한 보상조정을 동시에 제안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은 통보의 접수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제거한 조달기관을 수정제안의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한쪽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당사국이 그러한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국은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의 성질을 명료하게 하고 이 장에 따른 조달기관의 지속된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정보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16 조 미소 및 중소기업의 참여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미소 및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입찰 절차에 공동 참여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급자 간, 특히 미소 및 중소기업 간 사업 협력의 중요성 또한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수한 필요성에 집중하여 정부조달 절차, 방법 및 계약요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14.17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각자의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더불어 각자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가. 규제 틀, 우수 관행 및 통계와 같은 경험 및 정보의 교환
 - 나. 정부조달제도에 있어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
 - 다.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해 공급자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그리고
 - 라. 공무원 연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강화

제 14.18 조 정부조달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평가하고, 양 당사국에게 적절한 활동을 권고한다.
 - 나. 협력활동을 조정한다.

다. 양 당사국이 제시하는 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실시 한다. 그리고

라.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교섭을 고려한다.

3.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회합한다. 회합은 필요에 따라 전화,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다른 수단을 통해 개최될 수 있다.

제 14.19 조 추가 교섭

이 협정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자신의 정부조달 시장접근 적용범위에 대해 비당사국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섭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 14.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해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해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등록, 자격심사 또는 그 밖의 선행조건을 말한다.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찰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액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공급자가 제시하기 위해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그리고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에게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행정 지침이나 관행, 또는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조달기관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결정하여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란 조달기관이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부품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당사국의 부속서 14-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권유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기술한 것, 또는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
을 다루는 것